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3차 교육위원회)
2016. 7. 14. 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덕환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6년 6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16년 6월 30일

3. 제안이유

행정환경 변화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청 국(局)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, 직속기관의 유사·중복 기능을 통합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며,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함(안 제5조의2)

나.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다음을 신설함

1)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·조정예 관한 사항(안 제6조제1항제20호)

다. 행정국장 분장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설함

1) 교육공무직원 지원·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

(안 제7조제1항 제22호)

2) 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제1항제23호)

3)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제1항제24호)

라. 직속기관에 분원 또는 분관을 설치함

- 1) 중앙도서관 분관으로 미원도서관을 설치함(안 제16조의2)
- 2) 학생교육문화원 분원으로 학생교육문화관을 설치함(안 제19조의2)
- 3) 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으로 충주영어체험센터, 북부영어체험센터, 남부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함(안 제25조의2)
- 4) 충주학생회관 분관으로 중원도서관을 설치함(안 제37조의2)
- 5) 학생해양수련원 분원으로 제주수련원을 설치함(안 제46조의5)

마. 보령교육원과 제주교육원을 통합하여 학생해양수련원을 신설함
(안 제41조부터 제46조의5)

바. 청명학생교육원의 공립형 대안중학교 변경 설립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함(부칙 제2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자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을 위한 것으로,
- 안 제5조의2에서는 “행정관리국” 을 “행정국” 으로 변경하고,
- 안 제6조제1항은 교육국장 분장사무중 제4호의 장학생 선발, 장학금 관리, 제12호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, 제17호의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0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·조정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.
- 안 제7조는 ‘(행정관리국)’ 의 제목을 ‘(행정국)’ 하였고, 안 제7조제1항 제6호의 ‘학생 수용계획’ 을 ‘학생배치계획’ 으로 변경하였고.

- 안 제7조제1항 행정국장 분장사무중 제9호의 의회협력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, 제13호의 법제에 관한 사항, 제14호의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, 18호의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22호에 교육공무직 지원·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, 제23호에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, 제24호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.
- 중앙도서관 등 5개 직속기관에 미원도서관등 7개의 분관 및 분원을 설치하였고,
- 안 제41조부터 제46조의5는 보령교육원과 제주교육원을 통합하여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신설하였으며,
- 부칙 제2조는 2017년 3월 1일자 공립형 대안중학교로 전환되는 청명 학생교육원의 존속 기한을 2017년 2월 28일까지 설정하였음.
- 본 조례의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국 명칭의 간소화, 안전총괄업무 운영 부서의 명확화, 국(局)별 분장사무 조정, 직속기관의 기능강화와 기관수를 정비하고 유사·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 확대와 규모의 적정성 및 업무의 능률성 유지를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